

2025년도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공고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 업체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16.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도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비:** 86.4백만원
-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방지시설 설치, 연료전환 지원은 추진하지 않음.
- 지원금액:** 지원한도 내 부착 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자부담 10%)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지를 둔(산업단지 제외)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소기업

※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

1. 지원대상

○ 아래 4개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 ① 부평구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산업단지 제외)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전(2022. 5. 3.)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둔 사업장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 및 측정 결과를 전송하여야 하는 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 위 4개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배출 및 방지시설
-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2. 지원내용 및 범위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 구성 : 전류계(배출 및 방지시설), 온도계, 차압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 지원범위 : 전체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원(부가세 제외)

※ 국비 50% + 시비 20% + 구비 20% (자부담 10% 별도)

※ 품목별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액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 지원제한

- 1개 사업장 당 배출구 최대 2개까지 지원
- 1개 배출구 당 배출시설 전류계 최대 2개까지 지원

※ 지원제한에서 초과하는 시설분은 신청사업장이 자부담으로 설치 완료하여야 함.

3.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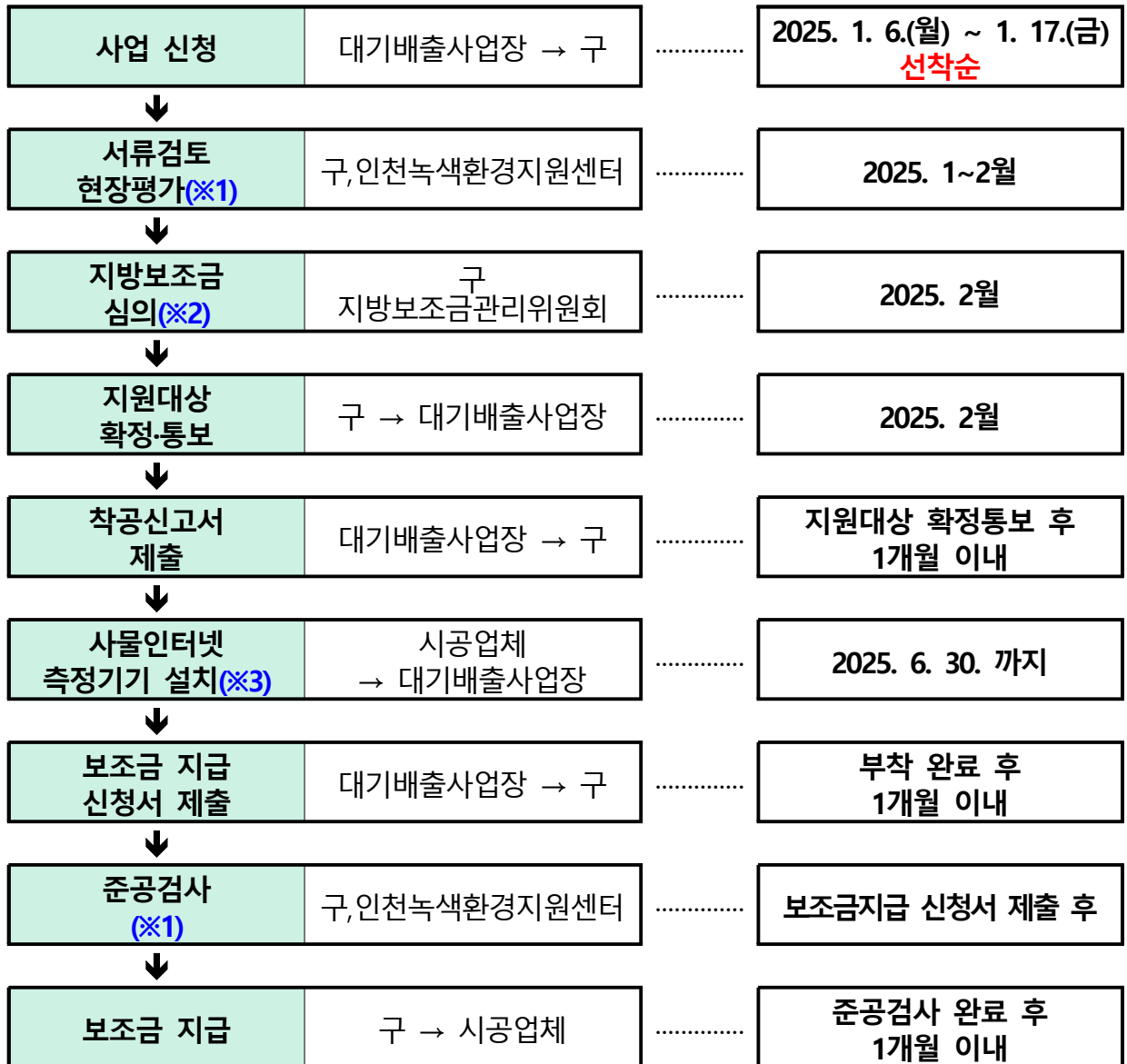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시설 설치 및 측정자료 전송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간 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지원받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www.greenlink.or.kr)에 자료를 전송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자료가 전송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지원제한을 초과하는 시설분은 신청사업장이 모두 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자부담 설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시공업체는 신청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직접 선정
 - ※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시설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신청사업장에 있음.
 - ※ 시공업체 목록은 [그린링크 홈페이지 - IoT - 업체소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1. 6.(월) ~ 1. 17.(금), 선착순 접수
- 제출서류: [붙임 1] 참조하여, 접수서류 및 전자문서(스캔본) 각 2부 제출
- 제출방법
 - 종이문서 : 부평구청 6층 환경보전과로 방문 제출
 - ※ 우편접수 불인정
 - ※ 종이문서는 원본을 제출하고, 첨부되는 구비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전자문서 : 사업 담당자 전자우편 LHS0518@korea.kr 로 제출
- 신청 유의사항
 - 접수순으로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 일부 예비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음.
접수순은 부평구청 환경보전과 방문 및 종이서류 제출순서를 기준으로 함.
 - 접수는 종이서류가 제출되어야 인정되며, 이메일만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음.
 - 서류접수 이후 서류검토, 현장평가, 보조금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됨.
 - 접수 이후 서류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접수 전 현장여건 및 사업장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제출)
 - 선착순 접수되었어도 서류 미비, 금액산정 부적정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는 폐기함.
- 지원대상 확정·통보 : 2025. 2월 중
 - 대상 확정 후 착공신고서 제출 등 절차는 선정사업장 대상으로 별도 공지

8.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1) ○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준공검사 시 배출사업장 및 시공업체 모두 참석할 것.
○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시 지원범위 수정 및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2) ○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단계에서 이상이 없어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및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자료 전송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2025. 6. 30.까지 법정기한 반드시 준수
(미준수 시 보조금 지원 불가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9. 보조금 집행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후 지급

- 법정기한인 **2025. 6. 30. 이내 설치 완료**하여야 함.
 - ※ 법정기한 내 설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으로 행정처분 대상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선정사업장 대상으로 별도 공지
- 준공심사 및 보완
 - 신청 당시 제출한 설치 계획대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현장 확인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신호의 정상 전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금 신청 >

-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시설 설치 후 3년간(준공 다음연도부터) 구에서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협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비 운영 등 관리 실태 현장 확인(연 1회 이상)

10. 보조금 환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환수

| 구 분 | 보조금 회수율 |
|-----------------|---------|
| 3개월 미만 | 8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IoT 관리시스템)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사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을 제출하고, 이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계측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5.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사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환수 예외

○ 보조금 지급 취소 조건 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 반납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공고일 기준 설치된 대기배출시설이 신고(허가)증명서 상과 상이한 경우
- 준공 시 부적합 시설
 - 준공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계약시작일 이후로 3개월 이내 아무런 사유(승인) 없이 방지사설 설치(준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2025. 6. 30.까지 설치를 못할 경우** 설치비 지원이 아니 될 수 있음
- 사업승인 후,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1. 문의: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 ☎ 032-509-6653

《사물인터넷》

- 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 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서식 2]
-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④ 사업장 위치도(서식 3) 1부 [서식 3]
- ⑤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각 1부
-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사본 1부
- ⑦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서식 4]
-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5]
- ⑫ 보조금 반납 약속서(서식 16) 1부 [서식 6]
- ⑬ 위임장 [서식 7]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 | | |
|----------|--|----------|--|
| 신청(배출)업체 | | 설치(시공)업체 | |
| | | IoT 제조사 | |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 관련시설 | | 설치대상 | 내역 | | | 비고 |
|------|----|-----------|----|----|----|------------------|
| 배출 | 방지 | | 단가 | 수량 | 금액 | |
| | | 합계 | | | | |
| | | 전류계(배출시설) | | | | 단위:원 (VAT 제외) |
| | | 전류계(방지시설) | | | | |
| | | 차압계 | | | | |
| | | 온도계 | | | | |
| | | pH계 | | | | |
| | | IoT 게이트웨이 | | | | |
| | | VPN | | | | |

※ 설치대상은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면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 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 . .

신청(배출)업체 : (인)

설치(시공)업체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

- ※ 통합전원에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상세 기재
(통합전원에 설치 시 시설별 전류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 표시)
 - 측정기기 부착 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 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배출시설명과 용량, 시설간 이격거리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 기재.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①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 가능하도록 필수 기재

1) 방지시설-방지시설명(용량) 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사진

| | | |
|---------------|----------------|------------------|
| | | *배전반 내 정확한 위치 표시 |
| 방지시설명(용량) | IoT 게이트웨이 설치위치 | 방지시설 전류계 설치위치 |
| | | |
| 방지시설 차압계 설치위치 | 방지시설 온도계 설치위치 | 방지시설 pH계 설치위치 |

2) 배출시설-배출시설명(용량) 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사진

| | | |
|-----------|-----------|------------------|
| | | *배전반 내 정확한 위치 표시 |
| 배출시설명(용량) | 배출시설명(용량) | 배출시설 전류계 설치위치 |
| | | *배전반 내 정확한 위치 표시 |
| 배출시설명(용량) | 배출시설명(용량) | 배출시설 전류계 설치위치 |

※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경우, 증명자료 첨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부착면제 사유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 6.) 5쪽~8쪽 참조

【서식 3】

사업장 위치도

| | | | |
|-------------|---|---------|--|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 본 사 연 락 처 | ☎ | 팩 스 | |
| 사 업 장 주 소 | | | |
| 사 업 장 연 락 처 | ☎ | 팩 스 | |
| 담 당 자 연 락 처 | ☎ | 핸 드 폰 | |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 6】

보조금 반납 약속서

| | |
|--------|-----|
| 사업장명 | |
| 주 소 | |
| 대표자 성명 | (인) |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사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사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사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방지사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 방지사설 사용기간 | 보조금 반납율 |
|-----------------|---------|
| 3개월 미만 | 8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사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서식 7】

위 입 장

| | | |
|----------------------------|----------------------------|--------|
| 수입자 (위임받는자, 시공업체) | 사업장명 | |
| | 주 소 | |
| | 대표자명 | (인감도장) |
| | 생년월일 | |
| 위임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 사업장명 | |
| | 주 소 | |
| | 대표자명 | (인감도장) |
| | 생년월일 | |
| 위임사항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
| 사업기간(일자) | 2025. . . ~ 2025. . . | |

상기 위임자는 수입자에게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5년 월 일

위임자 : (인감도장)

붙임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구성 및 규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차압계 (압력계) | 40 | 36 | 20 | 16 |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 PH계 | 100 | 90 | 50 | 4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 VPN | 40 | 36 | 20 | 16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구분 | 장치의 기능 | 비고 |
|----------------|--|----|
| 측정기기 |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 |
| IoT 게이트웨이 |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 |
| 가상사설망 (VPN) |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 |
| IoT 관리시스템 |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 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모델명 기준)의 품질보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하여야 함. 다만,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KS인증으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구분 | 전류계 | 차압계 | 온도계 | pH계 |
|--------------------|--|---------------------------|----------------|-----------------------|
| 설치대상 |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 - 흡수에 의한 시설 |
| 측정범위 ¹⁾ | 0 ~ 600A | 0 ~ 500mmH ₂ O | -40 ~ 100℃ | 0 ~ 14pH |
| 오차 ²⁾ | ±5% 이내 | | | |
| 동작온도 | -20 ~ 60℃ | -20 ~ 60℃ | -20 ~ 60℃ | 0 ~ 80℃ |
| 형식 | - | - | Pt 100Ω, 열전대 등 | - |
| 온도보상 | - | - | - | 0 ~ 50℃ ³⁾ |
| 운용전원 | - | DC24V(100~220VAC), 60Hz | | |
| 공통사항 | (출력신호 ⁴⁾) 4 ~ 20mA (표시장치 ⁵⁾)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 | |

¹⁾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²⁾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³⁾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⁴⁾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⁵⁾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 (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